

2023년 「보훈 테마활동」 사업 추가공모 시행 공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청소년의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2023년 『보훈 테마활동』을 추진할 보조사업자를 추가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28.

국가보훈처장

1. 사업 개요

- 사업내용 : '나라사랑'과 '보훈'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보훈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청소년 나라사랑정신 함양

☞ 공모 주제

- 독립 :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독립정신
- 호국 :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호국정신
- 민주 : 2·28, 3·8, 3·15, 4·19, 5·18 민주화 운동 등 민주정신
- 공익수호 : 경찰, 소방 등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는 고마운 분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

* '22년 보훈테마활동 우수사례 참고 : 국가보훈처 나라사랑배움터 사이트(<http://edu.mpva.go.kr>)
게시(이달의 배움-배움 자료실-교사용 참고자료)

- 사업기간 : '23. 4월 ~ '23. 10월
- 참여대상 :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 지원규모 : 60여개 프로그램, 프로그램 당 1,000만원 지원 원칙
 - ※ 사업내용, 규모에 따라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2,000만원까지 지원 가능

2. 공모 대상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사립 대학교에 한함)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사립 초·중·고에 한함)
- 청소년관련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시설 및 단체
 - *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 및 단체의 경우 해당 안됨
- 문화원 등 기타 청소년 대상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신청 제한 대상〉

-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중앙부처 및 시·도 등)에 중복 제출하거나 이미 시행한 사업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또는 지급받아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 ◆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공모 절차 * 일정 변경 가능

○ (공모신청)

- 신청기간 : 2023. 2. 28(화) ~ 3. 17.(금)
- 신청방법 : 신청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관서 e-mail로 제출 ※ 붙임1 참조
- 제출서류
 - ① 지원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 한글파일(1개) 제출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③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 신청기관이 단체, 법인인 경우
 - ④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 최근 1개월분 또는 기관·단체 신고분

○ (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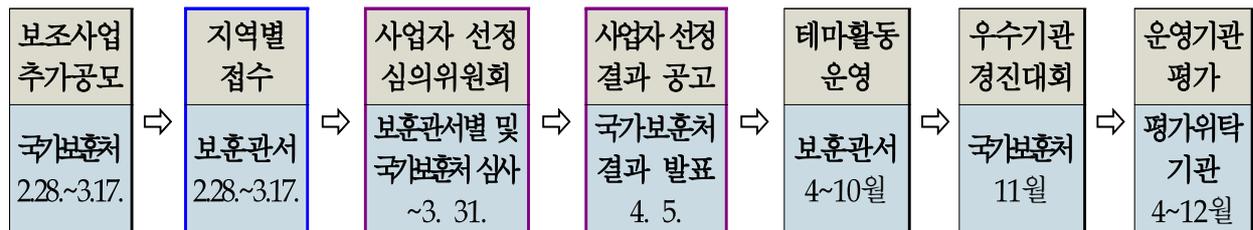
- 심사기간 : 2023. 3. 20.(월) ~ 3. 31.(금)
 - * 보훈관서별 자체심사 후 국가보훈처에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구성, 심사·선정
- 심사기준

구분	배점	평가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사업계획 및 프로그램 구성의 창의성·독창성 학교, 지역자원과 연계성 연간 참여인원 수
실행가능성 및 기대효과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부 이행방안의 적정성 기대되는 파급효과 청소년의 욕구·흥미반영
예산편성의 적정성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달성에 적절한 예산편성 예산편성 기준 준수 여부
홍보·운영능력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의 지역사회 홍보계획 안전 및 위생관리

○ (선정·발표)

- 선정절차 : 보훈관서별 자체심사(심사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 국가보훈처에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구성하여 최종 결정 및 결과 발표
- 결과 발표일 : 2023. 4. 5.(수)
-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및 개별통보

4. 사업일정



5. 기타 유의사항

- 자부담은 전체 사업비의 10% 이상 계상할 것
- 예산 범위 내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체험기회가 제공되도록 운영
 - * 신청서상 운영 횟수, 인원 명시
- 지역자원 연계하여 프로그램 구성 및 단순 탐방이나 강의위주 프로그램 지양
- 참가자와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 프로그램 운영
 - 학교 외 선정된 기관의 프로그램은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권고
 -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에 의한 인증제 해당 프로그램에 한함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 ◆ (내용) 수련활동이 갖는 일정기준 이상의 형식적 요건과 질적 특성을 갖춘 청소년 활동이 정당한 절차로 성립되었음을 공적기관에 의해 증명하는 제도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5조
- ◆ (제외 대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나 축제, 단순 기능습득을 위한 훈련이나 강좌 등
- ◆ (인증 대상) 청소년참가 인원이 1회에 150명 이상 규모,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참조
- ◆ (인증 기준) 안전관리인력 확보, 프로그램 구성, 지도자 전문성 등
- ◆ (인증 기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나라사랑배움터 학습자료 활용하여 테마활동 프로그램 구성
- 선정된 프로그램은 국가보훈처에서 선정한 **평가기관에 의한 서면 및 현장 평가 대상**
- 보조금 정산 및 결과보고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 제출서류 누락, 지정 서식 이외의 서식 제출은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기관은 관련법령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당할 수 있음
- 이 계획에 의하여 지원받은 기관은 지원사업의 수행과정이나 수행 완료 후 사업 평가를 위한 국가보훈처 및 국가보훈처가 위탁한 평가기관의 자료요구나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기준과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이 발견될 경우 전액 환수 당할 수 있음

【붙임 1】

보훈 테마활동 접수기관

접수 기관명	관할지역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서울 지방보훈청	서울특별시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마포구, 서대문구, 강동구, 송파구,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이주영	02-2125-0848	wnyoung214@korea.kr
서울남부 보훈지청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강남구, 서초구	박영인	02-3019-2318	yipark84@korea.kr
서울북부 보훈지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김미영	02-944-9205	kmy7390@korea.kr
경기남부 보훈지청	경기도 수원시, 과천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오산시, 의왕시, 평택시, 화성시	조다정	031-259-1717	dajeong25@korea.kr
인천 보훈지청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광명시, 김포시	윤승록	032-588-4127	soonrok@korea.kr
경기북부 보훈지청	경기도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강하라	031-820-0418	wannahoo@korea.kr
경기동부 보훈지청	경기도 용인시,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안성시, 이천시, 여주시	김지수	031-289-2317	tetra0406@korea.kr
강원서부 보훈지청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화천군, 양구군, 홍천군, 인제군, 철원군, 횡성군	김덕희	033-258-3604	rydbr12@korea.kr
강원동부 보훈지청	강원도 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정선군, 평창군, 영월군	김은정	033-610-0609	eun13@korea.kr
부산 지방보훈청	부산광역시	제유라	051-660-6214	jyr12345@korea.kr
울산 보훈지청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양산시	부현식	052-228-6524	sooster271@korea.kr
경남동부 보훈지청	경상남도 창원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창녕군, 의령군, 함안군	이윤희	055-981-5616	uni337@korea.kr
경남서부 보훈지청	경상남도 진주시, 사천시, 통영시, 남해군, 하동군, 고성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산청군	박상호	055-760-2821	soal123@korea.kr

접수 기관명	관할지역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대전 지방보훈청	대전시, 계룡시, 논산시, 부여군, 금산군	오규진	042-280-1127	oqjin@korea.kr
충남서부 보훈지청	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홍성군, 예산군, 청양군, 서천군	한원정	041-630-3732	hwj722@korea.kr
충남동부 보훈지청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 세종특별자치시	장재호	041-589-4916	luke2804@korea.kr
충북남부 보훈지청	청주시, 진천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신인우	043-299-6226	inwoo12345@korea.kr
충북북부 보훈지청	단양군, 제천시, 충주시, 음성군, 괴산군, 증평군	조윤재	043-841-8815	yunjae1@korea.kr
대구 지방보훈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상주시, 김천시, 구미시, 경산시, 성주군, 칠곡군, 고령군, 군위군, 청도군	김희철	053-230-6064	khc9619@korea.kr
경북북부 보훈지청	경상북도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봉화군, 의성군, 영양군, 청송군, 예천군	박소현	054-650-1414	sowon@korea.kr
경북남부 보훈지청	경상북도 경주시, 포항시, 영천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김상헌	054-778-2656	ksh4708@korea.kr
광주 지방보훈청	광주광역시, 나주시, 담양군, 장성군, 화순군, 강 진군, 장흥군, 해남군, 완도군	조진영	062-975-6643	anji000@korea.kr
전남동부 보훈지청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고 흥군	정한별	061-720-3215	onestar95@korea.kr
전남서부 보훈지청	목포시, 무안군, 영광군, 진도군, 함평군, 신안 군, 영암군	표지영	061-270-6816	mylllshe@korea.kr
전북동부 보훈지청	전주시,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 군, 순창군, 무주군	이유진	063-239-4514	candy731@korea.kr
전북서부 보훈지청	익산시, 군산시, 정읍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신채운	063-850-3715	full777@korea.kr

【붙임 2】

공모사업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에 의거 정확하게 편성
 - 보조금 중 간접사업비 집행은 아래의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기준 이내로 작성), 명확한 산출 근거를 명시
 - 강사료는 외부강사에 한하여 편성하며, 기관 내부 임직원에 대하여는 보조금으로 강사료를 편성할 수 없음
 - 회의비 편성 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로 편성, 회의참석비는 기관 내부 임직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단순인건비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준비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용인부를 활용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
 - 원고료는 지급대상자로부터 원고를 받아 교재 등을 편찬할 때만 인정하고,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원고료는 편성할 수 없음
 - 여비는 지역 내 경우에는 1일 20,000원 이내로 책정. 다만, 사업의 특성상 타 시·도 등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에 대한 실비를 편성할 수 있고, 국내 항공이용 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 다만, 제주도 출장을 위한 국내항공이용은 예외적으로 인정
- 보조금 예산은 비목 설정 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국고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음
 - ※ 예시) 「○○○사업현황」 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 경비(총100만원 소요)를 보조금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고, 자부담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는 사례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아래 항목은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음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전산장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소송비용 등 기관 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불우이웃 성금, 진료비, 시상금 등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 (수리비, 보험료 등) 등

※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 및 간접비용 초과금액은 전액 자부담 처리

-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건명, 단가×횟수×인원 포함)하되, 예비비, 기타잡비, 잡수수료, 잡비 등 산출내역이 불분명한 것은 인정하지 않음
- 예산안은 지출항목별(인건비, 인쇄비, 홍보비 등)로 작성하여야 하며, 지출항목란에 프로그램 또는 사업별로 나열하지 말 것

<지출 항목 예시표>

지출항목	산출내역
인건비	- 외부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 보조인력 인건비
기획홍보비	- 현수막, 매체홍보 등
인쇄비	- 포스터, 리플렛 제작 등
회의비	- 회의진행 시 소요되는 경비(식음료 및 회의수당)
임차비	- 장비 및 시설대관료
교통비	- 시내/외 출장여비 - 사전답사비 - 프로그램 중에 소요되는 이동수단비용
숙식비	- 숙박비 - 식비 - 간식비
보험료	- 활동에 필요한 보험가입비
소모품비	- 소모성 문구류
프로그램진행비	- 프로그램 진행중에 사용되는 물품과 경비 - 의약품 등

※ 상기 표는 예시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구성요소가 아니므로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자유롭게 지출항목 설정 할 것

<예산 편성 기준표>

항목	지급대상		사용한도액	비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강사료	특강 (I)	- 국내외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 소속기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 1시간 1,000,000원 이내	
	특강 (II)	- 전·현직 장관(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소속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 사회적 명망이 높은 문화·예술·종교인·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소속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 1시간 400,000원 - 초과 매시간당 300,000원	
	특강 (III)	- 전·현직 차관(급) - 공공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이에 준하는 자	-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소속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문화·예술·종교인·기업 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소속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 1시간 300,000원 - 초과 매시간당 200,000원	
	일반 (I)	- 전·현직 4급이상 - 공공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임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특강이외의 대학교수·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 시민단체 임원, 연구소 연구원 등	- 1시간 230,000원 - 초과 매시간당 120,000원	
	일반 (II)	-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직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1시간 120,000원 - 초과 매시간당 100,000원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1시간 40,000원	
	다수인 출강	- 2시간 미만		- 5인이하 27.5만원 - 6~10인 40만원 - 11이상 55만원	전통음악 및 무용 등 다수인의 참여
	- 2시간 이상		- 5인이하 35만원 - 6~10인 50만원 - 11이상 70만원		
회의참석비	- 2시간 이내 - 2시간 초과시(1일 1회에 한함)		- 150,000원 - 50,000원		
단순인건비	-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		- 1시간 9,620원		
원고료	A4용지 1매기준 - 80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12,000원		
여비	- 시내여비 - 시외여비 · 교통비 : 실비 · 숙박비(1인 1실) · 식비(1인 1식)		시내여비 : 20,000원 시외여비 · 교통비 : 실비 · 숙박비 : 서울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기타 50,000원 · 식비 : 10,000원(1인 1식)	4시간 이내 출장시 50% 지급	

- *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의 경우, 청탁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외부강의 등 사례금을 지급
- *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요건을 우선 적용
- *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
- *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 제2호의 적용기준에 따라 구분
- * 교육 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속기관장이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례에만 적용

운영계획서(프로그램명 기재)

※ 7p 이내로 작성, 양식을 임의로 변경금지, 쪽번호는 아래 가운데 표기

I. 사업 추진 배경

※ 개발된 프로그램의 특성, 환경적 요인, 대상(청소년 등)의 흥미와 욕구에 따른 사업방향 등 기술(짧게)

II. 프로그램 계획

1. 개요

1) 사업 목적

2) 사업추진 대상

3) 사업추진 기간

4) 사업추진 장소

2. 참가자 선정 방법/인원

3. 지도인력 확보

※ 지도인력 명단과 경력사항 기재(사진 불요)

4. 시설 및 장비 확보·활용

※ 간단히 작성

5. 지역사회(학교포함) 연계 및 홍보

※ 연계방안이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기술

6. 안전 및 위생관리

※ 안전요원 필수

7. 청소년 인증 프로그램 여부(초·중·고등학교는 불요)

※ 여가부 인증제 준수계획, 기관 운영 프로그램 중 기 인증프로그램 여부

III. 세부 사업내용

1. 일정별·추진단위별 추진 내용

※ “일정표” 를 활용하여 일목요연하게 작성

2. 추진단위별 세부 프로그램 내용

※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내용 작성(시간계획표 등 제시)

IV. 소요예산

(단위 : 원)

구분	금액	세부항목	금액	비율(%)	비고
총사업비	(100%)	국고보조금			
		기관부담액			

1. 국고보조금 ※ 지출항목은 세부프로그램이 아님. 회계기준에 준하여 작성

(단위 : 원)

지출항목	금액	산출내역
기획·홍보비		○
인건비 (강사료 등)		○
:		○

2. 기관부담액

(단위 : 원)

지출항목	금액	산출내역
기획·홍보비		○
:		○

V. 기타

1. 청소년 활동 및 교육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 이내)

※ 국가보훈처 지원사업 포함

(단위 : 백만원)

기간(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기관	지원액
2022년				
2021년				
2020년				

2. 프로그램 운영기관 현황

조직현황 (종사자수)	※ 상근직원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기재					
2023년 재정구조	자체예산	민간기부	수익사업	국고보조	기타()	합계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100%)